

---

#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송향근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

## 1. 머리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한국어 교육은 2000년대에 들어와 국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와 함께 학습 지역이 확대되고 학습의 목적도 다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회 구성원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의 다양화에 따른 학습 수요의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한국 기업의 국외 진출 증가와 국내 노동 시장 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외국인 고용 확대, 한국 문화의 국외 보급 등으로 국외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 구성이 재외 동포 중심에서 현지 외국인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학문과 취업 중심에서 취미 목적까지 그 학습 목적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및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한 국내 외국인 거주 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요구도 더욱 확대되며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는 국내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인식이 커지는 것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내에서 한국어 교사의 양성은 1990년대에 들어와 몇몇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훈련된 교사의

자체 수급 목적으로 단기 양성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교육대학원들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일반대학원과 학부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sup>1)</sup> 그러나 이 시기에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통해 양성된 예비 한국어 교사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격을 인증받고 한국어 교육 기관에 임용이 되는 교원 자격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이었으며, 정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 자격시험으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이 한국어세계화재단 주관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4회 실시되었다.<sup>2)</sup>

이후 교원 양성과 인증의 체계를 갖춘 교원 자격 제도는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비롯된다. 이 법령에 따라 ‘한국어 교원’<sup>3)</sup> 자격 제도가 정립됨으로써 한국어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법령에 규정된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대학·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과 한국어 교육 기관이 운영하는 비학위 단기 과정의 교육 과정이 체계화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성과와 더불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예비 교사들의 임용, 즉 신분과 역할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문제점과 교육의 질을 담

1) 교육대학원 과정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최초로 개설된 것은 1983년 3월 연세대학교이나 1986년 3월까지만 학생 입학이 있었으며, 1997년에 재개설되었다. 한국의국어대학교는 사범대학에 1974년부터 한국어교육과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실제 교육 과정에 근거할 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아닌 국어 교육 전공이었다. 현재는 교과 과정의 편성을 통해 한국어 교육이 실질적인 전공 차원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은 제1회 2002년, 제2회 2003년 7월, 제3회 2003년 11월, 제4회가 2004년 11월에 시행되었다. 총 1,026명이 응시하였고 249명이 합격하여 총 4회의 평균 합격률은 24.26%이다. 특히 제3회와 제4회 시험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인 일본 도쿄에서도 시행되었다.

3) 용어 ‘한국어 교원’의 사용은 ‘국어기본법’ 제정 당시, ‘교육법’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는 ‘교사’와의 혼동 가능성에 대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에 따라 제정안의 ‘한국어 교사’가 아닌 ‘한국어 교원’으로 수정됨에 기인한다.

보하기 어려운 비학위 단기 양성 과정의 운영 등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과제를 교원 자격 심사와 교원 수급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는 자격증 취득 희망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신청하면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합격한 신청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개인 인증 방식이다.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이수와 함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2급 자격증을,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이수와 함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총 12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비학위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3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그리고 2급과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충족하면 각각 1급과 2급으로 승급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실시 이후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의 급증 등 한국어 교육의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자격 심사에 있어 2005년 7월 최초 시행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여러 경우가 있었으나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개정과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상당 부분을 해결하였다. 특히 승급과 관련한 경력 인정에 있어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이전의 대학과 대학 부설 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그 외 기관으로 확대하고, 경력 인정 기간을 이전의 연수(年數) 기준에서 연수와 시간 수 동시 기준으로

개정함으로써 다가올 승급 심사에 대비하였다. 또한 2010년 초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도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기관이나 교원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6년 7월 처음 발급되기 시작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2011년 6월 현재 2급 2,782명, 3급 3,407명으로 총 6,189명이며, 2011년 상반기 현재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 과정은 64개 기관 86개 과정,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의 단기 양성 과정은 107개 기관 117개 과정이다.<sup>4)</sup> 현재 운영 중인 학위 및 비학위 양성 과정의 수와 매년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의 증가 정도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은 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은 교원 자격 심사를 개인 인증 방식에서 기관 인증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자격 심사의 절차는 자격증 취득 희망자가 학위 취득 후 자격 심사 신청을 하면 학위 과정의 경우 성적 증명서상의 교과목에 근거한 영역별 이수 학점, 비학위 과정의 경우 이수 증명서상의 이수 시간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법정 이수 학점과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개인 인증 방식으로 2009년까지 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학위 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교과 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국립국어원에 신청하게 하고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sup>5)</sup> 판정 결과를 받은 기관을 졸업

---

4) 이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립국어원에 기관 심사 신청을 한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학위 과정 및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과 해당 기간 이후에 신설된 과정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윤소영 외, 2011: 3, 6~7).

5) 조건부 적합 판정은 주로 교과목의 과목명, 교과 내용 등이 한국어 교원 양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내려지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한다.

또는 이수한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자격 심사 신청 시 이 기관 심사의 결과를 적용받는 기관 인증 방식으로 자격 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완전한 기관 인증 방식으로 심사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관 심사에 따른 심사 과정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원 양성 과정 운영 기관이 적합한 교과 과정과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부적합' 판정 결과를 받은 운영 기관의 양성 과정을 졸업 또는 이수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 판정 결과를 받은 운영 기관 및 그 양성 과정을 고시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수행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2)》(이하 '연구(2)'로 칭함.)는 쟁점으로 (1) 양성 과정의 교과 과정 및 교과목, (2)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적 수준, (3)설립된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의 관리 및 평가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1. 양성 과정의 교과 과정 및 교과목

현재 대부분의 학위 및 비학위 양성 과정 운영 기관은 교과 과정 및 교과목을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 근거하여 편성 및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별표 1]은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의 근거가 되는 교과목들을 '과목 예시'라 하여 해당 과목명을 '.....' 등으로 예시하고 있음으로 인해 양성 과정 운영 기관마다 매우 다양한 교과목으로 편성된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이유로 기관 심사 때마다 교과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검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판정 결과에 대한 재심 요청이 계속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2)》는 현재의 '과목 예시'를 '지정 과목'으로 개정하여 지정 과목을 지정하고 지정 과목에 대한 동일 교과목 인정 과목을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지정 과목과 인정 과목만을 적

합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방안인데, 개정안에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과목의 개설에 자율을 허용하는 현대 교육 운영의 일반적인 추세와는 방향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보다는 심사의 번거로움이 다소 예상되기는 하나, 최소 요건을 제시하고 교과목의 적합 여부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영역별 예시과목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교과목 개설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제시한다면 부적합 교과목의 빈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2. 양성 과정의 교수진 구성

위 쟁점 문제 (2)와 (3)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은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향상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연구(2)》는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의 인증 기준으로 기본 요건, 운영 여건, 학습 과목 3개 영역에서 10개 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10개 항목의 인증 기준과 그 구체적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본 요건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한<sup>6)</sup> 최소 1명 이상의 전임 강사와 총 5명 이상의 강사가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인증 기준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규정이다. 현재 상당수의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전임 교원 하나 없이 한국어 교육과는 무관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일천한 강사들로만 운영되는 실정을 고

6) “3영역과 5영역의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한함.”이라는 기준이 있다.

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전임 교원과 교과목 담당 강사에 대한 규정은 학위 과정인 학부와 대학원의 한국어교육학과나 전공에 더욱 필요한 조항이다. 현재 대학 학부 과정에 개설된 한국어교육학과(또는 학부의 하위 단위로 서의 전공) 가운데 일부는 기존의 국어국문학과를 한국어교육학과로 개편한 경우인데 이 중 몇몇 대학의 해당 학과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전임 교원이나 일정 기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전임 교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학과의 경우 한국어 교육 전공에 따른 교과 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운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과 교과목에 대한 기관 심사에서 다수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실례가 있다. 특히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교과목을 기존의 국어학이나 국문학의 내용과 교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한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에서 제시한 권고 수준의 한국어교육학과나 전공에 대한 전임 교원 배치 및 교수진 구성의 내용<sup>7)</sup>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에 개별 조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 2.3.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교과목 운영

현재 비학위 양성 과정 교과목의 실제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의 과목들이다. 교육 실습 과목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 규모 이

---

7)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에는 한국어교육학과(전공)에 한국어 교육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전임 교원으로 배치하고, 3영역 및 5영역 교과목의 담당 교수(강사)는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 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교수진을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0: 24).

상의 한국어 강좌를 상시 자체 운영하여야 하나,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 중 일부 기관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기관에서도 학습자나 교수자의 입장에서 참관, 실습 등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 교육 실습 과목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의 양성 과정에서는 다른 한국어 교육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한국어 수업 참관, 모의 수업, 실습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교육 실습 영역 과목들은 심사할 때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 2.4.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비학위 단기 양성 과정 이수자가 3급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2006년부터 국립국어원의 주관 아래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제1회~제3회 시험을 시행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4회~제5회 시험에 이어 올해 10월 2일 제6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험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은 시험 문항의 타당도 문제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론 이외 영역의 출제 위원들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상대적인 이해 부족 등에서 생겨난 문제로 한국어학, 언어학, 한국 문화 영역의 출제 위원들을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대학의 전임 교원 가운데에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출제 문항의 수를 현재보다 상당 정도로 줄이거나 출제(出題)와 선제(選題)가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출제 방식 대신 출제 기간을 확대하고 출제와 검토가 이 기간 동안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한다(송향근, 2011: 71).<sup>8)</sup>

8) 물론 이 경우에 소요 예산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가시험이라도 수혜자의 분담이란 면에서 응시료의 인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 3. 한국어 교원 수급

교원 자격 제도가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인증-임용’에 관한 체계가 갖추어지고 관계 법령에 이에 대한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하나, 현행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교원의 신분과 역할 등 임용에 관한 필요 내용을 담은 관계 조항이 없어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예비 교원들의 한국어 교육 현장 진입의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주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대폭 증가한 한국어 학습의 수요에 따라 한국어 교원의 수요는 증가하였고, 이런 수요의 증가세는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자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의 임용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임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임용 확대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6월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2급 2,782명, 3급 3,407명으로 총 6,189명이며, 한국 국적자 중 여성은 5,040명(전체 취득자의 81.4%)이고 남성은 780명(12.6%)이며 외국 국적자는 369명(6.0%)이다. 문화체육관광부(2010: 148~150)에 의하면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보유율은 22.9%이고,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보유율은 28.3%이다.<sup>9)</sup> 교원 자격증 미소지 교원의 향후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의향이 국외 70.7%, 국내 91.9%에 달하나 실제 취득자 비율을 최대 30%로 예측하더라도 향후 자격증 취득자의 한국어 교육 현장 진입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

9)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조사 대상과 각 기관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148).

세종학당 23.3%, 한글학교 21.6%, 한국문화원 16.1%, 한국교육원 16.7%, 한국어 교원 자격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은 국어문화원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 이주민센터 5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개 등 총 148개 기관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4).

그러나 예를 들어 현재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원 가운데 자격증 미소지자를 일정 유예 기간 이후에 자격증 소지자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한국어 교원의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 현장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변인들을 고려하여 자격증 취득자의 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외의 경우, 우리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세종학당과 세종교실에는<sup>10)</sup> 일정 비율까지 자격증 취득자를 임용하게 하고 이를 해당 기관 평가의 항목에 포함시킨다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도록 하고<sup>11)</sup> 해당 국가의 대학 입학시험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에도 초·중·고등학교에 국어 과목과는 별도로 한국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를 담당 교사로 임용하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시행에 있어 교육법상의 문제가 있다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교사 임용 시험을 실시하여 특수 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시에는 임용 시험 합격자에게 교직 과목을 이수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외에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은 한국어 교육의 주요 대상자이며, 한국

10) 2011년 9월 현재 세종학당은 24개국 42개소, 세종교실은 20개국 5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학당을 브랜드화하는 추진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국내 외에 기존 세종학당과 세종교실을 포함하여 세종학당 150개소의 신설과 세종교실 350개소의 인증을 통하여 총 500개 세종학당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 한국과 태국 교육부의 협조 아래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채택한 태국의 59개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에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소지자인 한국어 교육 전공 학부 과정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54명을 올해 9월 말에 파견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파견 사업은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라 노동자를 한국에 송출하는 다른 14개 국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 교원의 주요한 수요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이란 점에서 자격증 취득자가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그렇다면<sup>12)</sup> 지금까지의 3급 자격증 취득자 3,407명 가운데 약 75%인 2,566명이 인증 시험 합격이나 양성 과정 이수와 검정 시험 합격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이들 중 현장에서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한국어 교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 또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 이상 소지를 조건으로 함을 고려할 때 3급 자격증 취득자 중 교육 현장 교원의 상당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의 평균 19% 정도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란 점에서<sup>13)</sup> 알 수 있듯이 이들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제고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문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10년 상반기에 실시된 이 양성 과정의 1차 과정을 이수한 방문 교사의 7~8%만이 제5회 검정 시험(2010년 10월 실시)에 합격을 하였다는 점이다.<sup>14)</sup> 결국 결혼 이민자나 이주 근로자 대상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는 점진적 방안보다는 일정한 유예 기간 이후에는 자격증 미소지자를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현행 2급과 3급 교원 자격 제도와는 별도로 일정 시

---

12) 이하의 내용은 송향근(2011: 72)의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사 가운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급별 분포는 2급과 3급이 각각 5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63).

14) 지금까지 총 5회 실시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최종 합격률은 평균 25% 정도이다.

간 이상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다음 소정의 시험을 거쳐 가칭 '한국어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의<sup>15)</sup>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교원 자격증 부여를 위한 자격 심사와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어 예비 교원의 수급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를 처음부터 마련하기는 쉽지 않으며, 제도의 완성은 제도 자체와 함께 제도의 운용에 있다 하겠다.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의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어 현장 교원들은 비정규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데,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교원들의 신분 안정을 통한, 보다 안정된 한국어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방안이 제도화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재의 제도 안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생산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다양한 모색을 통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와 그 운용을 발전시켜 나가므로써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

15) 해당 양성 과정에 참여한 상당수의 방문 교사들은 여성 결혼 이민자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 학습 기간,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양성 과정 이수 후의 검정 시험 합격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양성 과정과 검정 시험을 통해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보다는 사이버 대학의 한국어 교육학 전공 졸업을 통한 2급 자격증 취득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방문 교사 중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수 등 대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다른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이직을 하는 점도 지적하였다. 결국 봉사 차원에서 한국어 교사를 한다는 방문 교사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방문 교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인식 제고 및 한국어 교육 능력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9),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0),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 문화체육관광부(2010), 《한국어 교육 기관 실태 및 수요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송향근·김정숙·박동호(2007),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국립국어원.
- 송향근(2011), 국립국어원과 한국어 교육,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69~81.
- 윤소영 외(201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2)》, 국립국어원.
- 조현성 외(2008),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